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행	개정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 제2항에 의거 <u>구청장이</u>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2조(권한의 위임) <u>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</u> 이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.	제1조(목적) .....주민등록법 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..... ... <u>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</u> ..... ..... 제2조(권한의 위임) <u>구청장</u> ..... ..... 1. .... <u>주민등록법시행령</u> ..... ..... 2. (현행과 같음) (삭 제) ..... 3. (현행 제4호와 같음)
1. 법 제17조의8 및 영 제36조 제1항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	1. 법 제17조의8 및 영 제36조 제1항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	1. .... <u>주민등록법시행령</u> ..... .....
2. (생략)	2. (생략)	2. (현행과 같음) (삭 제)
3. 법 제20조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·징수에 관한 사항	3. 법 제20조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·징수에 관한 사항	3. (현행 제4호와 같음)
4. (생략)	4. (생략)	

서울특별시마포구청정권한위임  
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1995. 9. 4.  
총무재무위원회

- 심사경과
  -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95.8.23. 마포구청장
  - 회부일자 : 95.8.24.
  - 상정일자 : 제33회 임시회 제7차위원회 (95.9.4)상정, 심사, 의결
-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이은규 기획예산과장)
  - 제안이유  
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서울특별시마포구청정권한위임조례를 정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구의회사무국장,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임.
  - 주요골자  
- 허가, 인가, 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 및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수임기관에 위임토록 하는 등 위임의 일반적인 기준을 규정(안 제2조)

-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등의 요구를 할 수 없도록 함(안 제4조)
  - 위임사무의 종류 94개 사무를 별표로 규정함(안 제5조)
-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박관수)
    - 종전에는 구청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과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로 정해야만 위임할 수 있었던 것이 94.12.20 지방자치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이 규칙으로도 위임할 수 있도록 개정됨으로써 구청장의 고유권한사무는 조례로 정하여 위임하고 구청장에게 위임된 수임사무는 규칙으로 정하여 재위임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인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 제4조와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 제3조에 규정되어 있음.
    - 동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현행조례에서 정한 위임사무중 별표 제25호에 규정된 독극물판매업에 관한 6개 사무는 그 근거법인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이 폐지되고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으로 대체되면서 서울시장에게는 권한이 위

임되었으나 구청장에게는 재위임되지 아니하여 삭제하는 것이며, 서울시장으로부터 구청장에게 위임된 24개의 수입사무는 규칙으로 재위임하기 위하여 삭제되는 것으로,

- 동 조례안에서 정하는 위임사무를 수입기관별로 구분하면 구의회사무국장 2개, 보건소장 82개, 동장에게 10개 등 총94개의 위임사무로 그중 신규로 위임되는 19개의 사무는 보건소장에게 위임되는 것이고 43개의 사무는 기존 위임사무에서 그 위임범위가 확대·조정되는 것으로 이는 불합리한 위임사무 내용을 정비·보완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므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편의를 도모하려는 동 조례의 개정은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- 질문요지(김종열의원) : 개정조례안 제2조 제2항에 구청장은 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수입기관의 수입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을 배정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례안 개정으로 인하여 예산배정의 필요성이 있는지?
- 답변요지(이은규 기획예산과장) : 기 위임된 사무는 기 예산조치가 되어 있고, 금번 추가된 위임사무는 특별히 예산조치의 필요성이 없으며 다만, 추후에 예산조치의 필요성이 발생시 예산조치토록 하겠음.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14
----------	----

제출일자 : 1995.8.23.

제출자 : 마포구청장

1. 개정이유

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서울특별시마포구 행정권한위임조례를 정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의 권한에 속하

는 사무의 일부를 구의회사무국장,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임.

2. 주요개정골자

- 허가, 인가, 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 및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수입기관에 위임토록 하는 등, 위임의 일반적인 기준을 규정(안 제2조)
  - 위임기관은 수입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등의 요구를 할 수 없도록 함(안 제4조)
  - 위임사무의 종류 94개 사무를 별표로 규정함(안 제5조)
3. 개정근거  
지방자치법(1995.1.5. 법률 제4877호) 제15조 및 제95조
4. 조례(안) : 별첨
5. 예산조치 : 필요없음

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마포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구의회사무국장,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임의 기준등) ①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허가·인가·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,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서 그가 직접 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위임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수입기관의 수입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을 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제3조(지휘감독 및 책임) 구청장은 위임한 사무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





주 관 국	사 무 명	근 거 법 령	수입기관
	<p>가.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·보존</p> <p>나. 예방접종 실시 현황보고 접수처리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결핵예방법 제19조 제1항</li> <li>○ 동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</li> <li>○ 동법 제19조 제2항</li> <li>○ 동법시행규칙 제10조제2항</li> </ul>	
	<p>4. 의료기관에 관한 다음 사무</p> <p>가. 의원·치과의원·한의원·조산원(이하 “의원등”이라 함)의 개설 신고 수리</p> <p>나. 의원등의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수리</p> <p>다. 의원등의 휴업·폐업의 신고수리</p> <p>라. 의원등의 업무개시 명령</p> <p>마. 의원등의 보고와 업무검사등</p> <p>바. 의원등의 시설·장비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제한·금지 또는 시정명령, 그에 따른 청문</p> <p>사. 의원등의 의료업 정지·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, 그에 따른 청문</p> <p>아. 의원등의 과징금부과 및 징수, 그에 따른 청문</p> <p>자. 의원등의 과태료부과 및 징수, 그에 따른 이의제기 처리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의료법 제30조 제3항</li> <li>○ 동법시행규칙 제22조</li> <li>○ 동법 제30조 제6항</li> <li>○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2</li> <li>○ 동법 제33조</li> <li>○ 동법시행규칙 제24조</li> <li>○ 동법 제48조 제2항</li> <li>○ 동법 제49조</li> <li>○ 동법 제50조 및 제63조의2</li> <li>○ 동법시행령 제31조</li> <li>○ 동법 제51조, 제53조의3 및 제63조의2</li> <li>○ 동법시행령 제31조</li> <li>○ 동법 제53조의2 및 제63조의2</li> <li>○ 동법시행령 제31조, 제33조 및 제34조</li> <li>○ 동법시행규칙 제60조</li> <li>○ 동법 제71조 및 제72조</li> <li>○ 동법시행령 제35조</li> <li>○ 동법시행령 제60조</li> </ul>	<p>보건소장</p>
	<p>5. 의료지도원의 배치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의료법 제48조, 제49조 및 제54조</li> <li>○ 동법시행규칙 제48조내지 제52조</li> </ul>	<p>보건소장</p>
	<p>6. 의료기관 개설특례에 의한 부속의료기관에 관한 다음 사무</p> <p>가. 개설신고수리</p> <p>나.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수리</p> <p>다. 시설·장비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의료법 제31조 제1항 본문</li> <li>○ 동법시행규칙 제26조</li> <li>○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2 및 제26조</li> <li>○ 동법 제50조 및 제63</li> </ul>	<p>보건소장</p>

주 관 국	사 무 명	근 거 법 령	수입기관
	<p>사용제한·금지 또는 시정명령, 그 에 따른 청문</p> <p>라. 의료업 정지·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과 이에 따르는 청문</p> <p>마. 과징금부과 및 징수, 그에 따른 청문</p> <p>7. 접골사, 침구사의 시술소(이하 “시술 소”라 함)에 관한 다음 사무</p> <p>가. 시술소 개설신고수리 및 개설신고 사항 변경신고 수리</p> <p>나. 시술소의 휴업·폐업신고 수리</p> <p>다. 시술소의 업무개시 명령</p> <p>라. 시술소의 보고와 업무검사등</p> <p>마. 시술소의 시설·장비등의 전부 또 는 일부의 사용제한·금지 또는 시정명령, 그에 따르는 청문</p> <p>바. 시술소의 의료업 정지 및 개설허 가의 취소, 그에 따르는 청문</p> <p>사. 시술소의 과징금부과 및 징수, 그 에 따른 청문</p> <p>아. 시술소의 과태료부과 및 징수, 그 에 따른 이의제기 처리</p>	<p>조의2</p> <p>○ 동법시행령 제31조</p> <p>○ 동법 제51조, 제53조 의3 및 제63조의 2</p> <p>○ 동법시행령 제31조</p> <p>○ 동법 제53조의2 및 제63조의2</p> <p>○ 동법시행령 제 31조, 제33조 및 제34조</p> <p>○ 동법시행규칙 제60조</p> <p>○ 의료법 제60조</p> <p>○ 동법시행규칙 제22조</p> <p>○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 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7조</p> <p>○ 동법제33조 및 제60조</p> <p>○ 동법시행규칙 제24조</p> <p>○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 사업자에관한 규칙 제 17조</p> <p>○ 동법 제48조 제2항 및 제60조</p> <p>○ 동법 제49조 및 제60 조</p> <p>○ 동법 제50조, 제60조 및 제63조의 2</p> <p>○ 동법시행령 제31조</p> <p>○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 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7조</p> <p>○ 동법 제51조, 제53조 의3, 제60조 및 제63 조의2</p> <p>○ 동법시행령 제31조</p> <p>○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 사업자에관한 규칙 제 17조</p> <p>○ 동법 제53조의2, 제60 조 및 제63조의2</p> <p>○ 동법시행령 제31조</p> <p>○ 동법 제60조, 제71조 및 제72조</p>	<p>보건소장</p>

주 관 국	사 무 명	근 거 법 령	수입기관
	<p>8. 안마시술소(이하 “시술소”라 함)에 관한 다음 사무</p> <p>가. 시술소 개설신고 수리</p> <p>나. 시술소의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수리</p> <p>다. 시술소의 휴업·폐업의 신고 수리</p> <p>라. 시술소의 보고와 업무검사등</p> <p>마. 시술소의 시설·장비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제한·금지또는 시정명령, 그에 따른 청문(의료법 제32조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한함)</p> <p>바. 시술소의 의료업정지·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, 그에 따른 청문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동법시행령 제35조</li> <li>○ 동법시행규칙 제60조</li> <li>○ 의료법 제30조 제3항 및 제61조</li> <li>○ 동법시행규칙 제22조</li> <li>○ 동법 제30조 제6항 및 제61조</li> <li>○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2</li> <li>○ 동법 제33조 및 제61조</li> <li>○ 동법시행규칙 제24조</li> <li>○ 동법 제49조 및 제61조</li> <li>○ 동법 제50조, 제61조 및 제63조의2</li> <li>○ 동법시행령 제31조</li> <li>○ 동법 제51조, 제53조의3, 제61조 및 제63조의2</li> <li>○ 동법시행령 제31조</li> </ul>	보건소장
	<p>9. 안경업소에 관한 다음 사무</p> <p>가. 개설등록</p> <p>나. 휴업·폐업 및 개설등록 사항 변경신고 수리</p> <p>다. 보고와 검사등</p> <p>라. 시정명령, 영업정지 또는 등록 취소, 그에 따른 청문</p> <p>마. 과태료부과 및 징수, 그에 따른 이의제기 처리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의료기사법 제13조의4</li> <li>○ 동법시행규칙 제15조 및 제16조</li> <li>○ 동법 제13조의5</li> <li>○ 동법시행규칙 제18조</li> <li>○ 동법 제13조의6</li> <li>○ 동법 제13조의7 및 제13조의8</li> <li>○ 동법시행령 제11조</li> <li>○ 동법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</li> <li>○ 동법시행령 제15조</li> <li>○ 동법시행규칙 제19조</li> </ul>	보건소장
	<p>10. 치과기공소에 관한 다음 사무</p> <p>가. 인정</p> <p>나. 휴업·재개업 또는 폐업, 인정사항 변경신고 수리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의료기사법 제3조</li> <li>○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및 제4항</li> <li>○ 동법 제3조</li> <li>○ 동법시행령 제2조 제1</li> </ul>	보건소장

주 관 국	사 무 명	근 거 법 령	수임기관
	다. 양수신고 수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항 제5호 및 제4항</li> <li>○ 동법시행규칙 제13조제4항</li> <li>○ 동법 제3조</li> <li>○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및 제4항</li> <li>○ 동법시행규칙 제13조제5항</li> </ul>	
	라. 업무사항 조사, 업무정지 또는 인정취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동법 제3조</li> <li>○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및 제4항</li> <li>○ 동법시행규칙 제14조</li> </ul>	
	11. 약국에 관한 다음 사무		보건소장
	가. 약국개설 등록 및 등록된 사항 변경등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약사법 제16조</li> <li>○ 동법시행규칙 제8조 및 제9조</li> </ul>	
	나. 약국 폐업·휴업·재개 신고 수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동법 제20조</li> <li>○ 동법시행규칙 제84조</li> </ul>	
	다. 약국관리자 승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동법 제19조</li> <li>○ 동법시행규칙 제10조</li> </ul>	
	라. 약국제제의 제조품목 신고 수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동법 제33조</li> <li>○ 동법시행규칙 제15조 내지 제19조</li> </ul>	
	마. 보고와 검사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동법 제64조</li> </ul>	
	바. 업무개시 명령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동법 제64조의2</li> </ul>	
	사. 폐기명령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동법 제65조</li> </ul>	
	아. 개수명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동법 제67조</li> </ul>	
	자. 관리자등의 변경 명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동법 제68조</li> </ul>	
	차. 등록취소와 업무정지등, 그에 따른 청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동법 제69조 및 제69조의2</li> <li>○ 동법시행규칙 제89조 및 제90조</li> </ul>	
	카. 약사 감시원의 배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동법 제70조</li> </ul>	
	타. 등록증 등의 갱신 및 재교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동법 제71조의2</li> </ul>	
	파.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, 그에 따른 청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동법시행규칙 제93조</li> <li>○ 동법 제71조의3 및 제69조의2</li> <li>○ 동법시행령 제30조</li> <li>○ 동법시행규칙 제90조 및 제91조</li> </ul>	
	하.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, 그에 따른 이의제기 처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동법 제79조</li> <li>○ 동법시행령 제31조</li> <li>○ 동법시행규칙 제91조</li> </ul>	
	12. 의료용구의 판매업에 관한 다음 사무		보건소장

주 관 국	사 무 명	근 거 법 령	수입기관
	<p>가. 등록 및 등록된사항 변경등록</p> <p>나. 보고와 검사등</p> <p>다. 폐기 명령등</p> <p>라. 개수 명령</p> <p>마. 등록증의 재교부</p> <p>바. 등록취소와 영업정지등, 그에 따른 청문</p> <p>사. 과태료부과 및 징수, 그에 따른 이의제기 처리</p> <p>13.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에 관한 다음 사무</p> <p>가. 설치신고 수리 및 신고필증 교부</p> <p>나.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양도 또는 폐기신고 수리 및 신고필증 교부</p> <p>다.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변동사항 신고 처리</p> <p>라.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관리대장 작성·비치 및 관리</p> <p>마. 의료기관의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상태 지도·감독</p> <p>바. 과태료 부과 및 징수, 그에 따른 이의제기 처리</p>	<p>○ 약사법 제42조</p> <p>○ 동법 제64조</p> <p>○ 동법 제65조</p> <p>○ 동법 제67조</p> <p>○ 동법시행규칙 제93조</p> <p>○ 동법 제69조 및 제69조의2</p> <p>○ 동법 제79조</p> <p>○ 동법시행령 제31조</p> <p>○ 의료법 제32조의2</p> <p>○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및 제2항</p> <p>○ 동법 제32조의2</p> <p>○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및 제2항</p> <p>○ 동법 제32조의2</p> <p>○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3항</p> <p>○ 동법 제32조의2</p> <p>○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4항</p> <p>○ 동법 제32조의2</p> <p>○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</p> <p>○ 동법 제71조 제1항 및 제72조</p> <p>○ 동법시행령 제35조</p> <p>○ 동법시행규칙 제60조</p>	보건의장